

# 일본의 코로나 대책 '대출과 급여'

불교대학 전임강사

사토 준코



일본 정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 각의 결정  
(2020년 4월 7일)

## 5가지 핵심 내용

- ① 고용 유지
- ② 자금 융통 대책
- ③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④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 ⑤ 세제 조치 (소득세 납부 기한 유예)

☞ 코로나 대출은 ④에 포함되지만, '대출'이므로 '급여'가 아님

# 코로나 대출의 특징

- ① 대출 실시 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비영리 사회복지법인)로,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시정촌에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② 코로나 대출 이전에도 공적 대출 제도(생활 복지 자금 대출 사업)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인지도가 낮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 ③ 주민세 비과세 가구는 상환 면제이다.  
...일본에서 주민세가 부과되는 가구는 월수입 약 10만 엔 이상  
(30,018TWD/1,260,000KRW)
- ④ 대출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 코로나 대출의 개요

## [긴급 소액 자금]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사람 [주로 휴업한 사람])

	본칙	특례 조치
대출 대상자	긴급하고 일시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등	<u>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가구</u>
대출 상한	10만 엔 이내	<u>학교 등의 휴업, 개인 사업주 등의 특례의 경우 20만 엔 이내 기타의 경우 10만 엔 이내</u>
거치 기간	2개월 이내	<u>1년 이내</u>
상환 기한	12개월 이내	<u>2년 이내</u>
대출 이자	무이자	<u>무이자</u>

## [종합 지원 자금 (생활 지원비)]

(생활 재건이 필요한 사람 [주로 실업한 사람])

	본칙	특례 조치
대출 대상자	저소득 가구로서 수입 감소 또는 실업 등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일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	<u>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수입 감소 또는 실업 등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일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u>
대출 상한	(2인 이상) 월 20만 엔 이내 (1인 가구) 월 15만 엔 이내 대출 기간 : 원칙 3개월 이내	좌동
거치 기간	6개월 이내	<u>1년 이내</u>
상환 기한	10년 이내	좌동
대출 이자	보증인 있음 : 무이자 보증인 없음 : 연 1.5%	<u>무이자</u>

# 코로나 대출 이용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

## 시가현 오쓰시 대출자의 속성 (2020년 6월 시점)

- ① 무직, 실업자·약 670가구⇒이직 및 도산(시내 호텔의 도산, 백화점의 폐점)
- ② 고령자 가구·약 260가구 ⇒연금+아르바이트로 생활했는데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다
- ③ 한부모 가구·약 195가구 ⇒출근 감소 + 학교 휴교
- ④ 외국인 가구·약 100가구



☞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의 상담이 많다

(시가현 오쓰시 사회복지협의회·오쿠노 유키 씨가 작성한 조사 자료 참고)

# 코로나 대출 확산이 일본 사회에 시사한 점

① 긴급 상황 발생 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공적 제도의 불충분

☞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밖에 없다

② 대출 제도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인지도 향상

③ 대출 제도 운용 체제의 불충분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인원 부족과 과중 노동)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사회 보장 · 사회복지 시책이 건설업이나 음식업 등의 자영업자, 모자 가구의 어머니,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 등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평가할 만한 점】

① 현금(생활비)이 신속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 10일~2주 이내에 대출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

②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 주체였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FOOD BANK, 모자 가구 등의  
당사자 상호 지원 등의 노력

☞ 향후 지역의 생계곤란자 지원의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었다

## 【의문점】

- ① 생계곤란자 가구에 대한 생활비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 ② 주민세 비과세 가구보다 연수입이 조금 많은 가구의 경우는  
상환이 대출자의 생활 재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③ 채권 관리의 외부 위탁에 대한 우려  
☞ 채권회수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지 않을까?



# 새로운 코로나 대책.

## 생계곤란자 자립 지원금 신설

【상한액까지 대출한 사람에 대한 급여금】

2020년 7월부터

- ①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매월 1인 가구: 6만 엔, 2인 가구: 8만 엔, 3인 이상 가구: 10만 엔 지급
- ② 수입 요건, 예금에 제한이 있으며, 구직 활동, 생활 보호 신청이 조건  
☞ 행정적 통지를 해도 신청 건수는 10~20%로 저조

# 생계곤란자 자립 지원금의 실패

그렇다면

왜 생계곤란자의 생활 보호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 생활 보호 수급 건수는 코로나 사태 2년째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대출 건수 증가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일반사단법인) 쓰쿠로이 도쿄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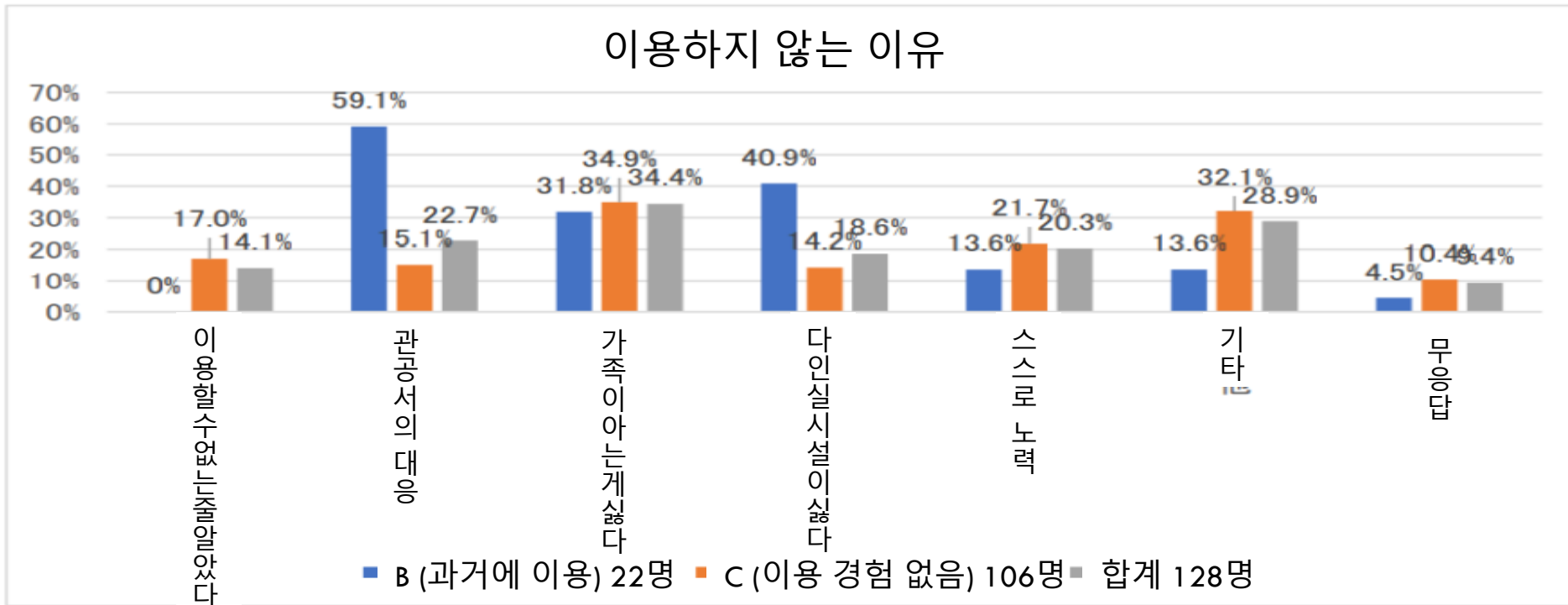
생활 보호의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말연시 설문 조사 결과의 개요 참고

과거에 생활 보호를 이용했던 사람의 약 60%는

생활 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관공서의 대응'을 들고 있다

##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복수 응답 가능)

	이용할 수 없는 줄 알았다	과거 관공서의 대응	가족이 아는 게 싫다	다인실 시설이 싫다	스스로 노력하고 싶다	기타	무응답
B (과거에 이용) (%)	0.0	59.1	31.8	40.9	13.6	13.6	4.5
C (이용 경험 없음) (%)	17.0	15.1	34.9	14.2	21.7	32.1	10.4
합계 (%)	14.1	22.7	34.4	18.6	20.3	28.9	9.4



# 왜 생활 보호 제도를 기피하는가?

생활 보호 제도가 신청자·수급자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았는가?

- ① 친족·이웃 관계 등 인간 관계로부터의 소외 (부양 의무 조사)
- ② 복지사무소의 자산 조사 (자동차·부동산 보유 제한, 생활 보호 수급 중 은행계좌 통장 사본 제출 등)
- ③ 생활 보호로부터의 '자립'을 방해하는 소지금 제한
- ④ 복지사무소의 '권위주의적 케이스워크'

## 생활보호법 제28조(1950년)

요보호자의 자산 및 수입 상황, 건강 상태, 기타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보호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요보호자의 거주 장소에 들어가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며,  
또는 해당 요보호자에게 보호 실시 기관이 지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생활보호법 제28조 제5

요보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고, 또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 개시 또는 변경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호를 변경,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 (2013년)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치욕’ 때문에 생활 보호 신청이 억제되고 있는 일본의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 ① ‘생활 보호 신청을 간소화’할 것
- ② ‘신청자에 대한 존엄성을 확보’할 것
- ③ ‘생활 보호에 대한 치욕을 해소’할 방법을 취할 것  
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을 대상으로 한 생활 보호 제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가?

현행 생활보호법에 따른

‘포괄적 급여’와 ‘현장 조사’의 조합에서

주택, 의료, 간병, 교육 등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 부조 급여로

**생활 보호 시스템을 재구축!**

多謝你！

감사합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